

정보교류차단 주요내용

제정 : 2021.05.20

인백스자산운용(주)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사의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시합니다.

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
2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3.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4.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II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는 정보

1.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
- ①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②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, 투자자문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③ 법령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운용보고서 등에 포함되는 정보 또는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운용점검 및 상품설명자료 검증을 위해 판매회사 등에 제공하는 정보
- ④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 각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.
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
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③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④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⑤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Ⅲ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

1. 회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 기준을 고려하여 고객재산부문과 고유재산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

- ① 생산·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-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(법 제77조의 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) 및 겸영·부수 업무
- ③ 구체적인 업무특성,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
- ④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

2. 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.

Ⅳ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기준

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Ⅴ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1. 거래유형

- ①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
- ②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
- ③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 재산과 거래하는 행위

2. 대응방안

- ① 자본시장법 등에서 거래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한다.
- ②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이해상충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여 고객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중단, 고객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이 발생하지

않도록 대응하여야 한다.

VI. 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

1. 고객이익 우선 원칙

-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
-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
-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.

2. 이해상충의 관리

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회사는 관련 법규의 준수여부 및 이해상충방지 등의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이해상충 발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평가 및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